

예천 제3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예천 제3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4 및 제19조의2,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계획을 승인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3월 31일
예 천 군 수

■ 농공단지계획(개발계획 및 실시계획)

1. 농공단지 명칭

-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

2.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요구
- 제2농공단지와 더불어 신도청시대를 맞이하는 낙후지역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
- 고용 및 소득창출이 높은 주력산업 선정, 입주 업체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수립

3.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일원
- 면적 : 180,699㎡(약 54,661평)

4.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

- 개발기간 : 2016년 ~ 2027년 12월 31일
- 개발방법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영개발

5. 주요 유치업종

- 식료품제조업(C10), 음료제조업(C11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금속가공제품(C25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(C27), 전기장비(C28), 기타기계 및 장비(C29)
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- 주소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
- 성명 : 예천군수

7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

가. 토지이용계획

-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, 기타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의 탄력성 확보
- 단지 내부 균등한 계획고로 공장용지 이용효율 증대
- 기 조성된 제2농공단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
-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녹지 구상
- 주변 토지이용현황, 도로망, 배수체계, 지구외곽 농로 연계도로 확보를 고려

< 토지이용계획표 >

구 분	면적 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180,699	100.0	
산업시설용지	122,572	67.8	가처분용지
지원시설용지	1,598	0.9	가처분용지
공원·녹지	22,888	12.7	
공 원	1,924	1.1	
녹 지	20,964	11.6	
공공시설용지	33,641	18.6	
도 로	24,079	13.3	
주차장	2,068	1.1	
폐수종말처리장	3,133	1.7	
배수지	487	0.3	
저류지	3,874	2.1	

나. 교통계획

- 폭 20m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폭 12~15m 국지도로는 격자형으로 계획
- 대상지 내부 도로는 제2농공단지의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연결되는 도로의 폭원을 최소 12m로 계획
-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기타 연결로 등은 도로 구배를 고려하여 폭원 3~4m로 계획
- 원활한 내부진입 소통을 고려한 적정 도로율 확보(10% 이상)

< 주차장 계획 >

구분	면적(㎡)	비 고
주차장	2,068	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.1%

< 가로망 계획 >

류 별	폭원(m)	노선수	연장(m)	비 고
계	—	12	1,884	
중로	1류	20m	1	92
	2류	15m	2	450
	3류	12m	6	1,193
소로	3류	3 ~ 4m	3	149
				배수지 진입로 등

다. 공원·녹지계획

-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, 농공단지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인접 취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대 배치
- 사업추진에 따른 설치물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녹지 설치
- 간선도로로부터의 완충공간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 계획
- 식재를 위한 수종의 선택은 공장녹화용 수종으로서 적합성, 자연환경과의 적응성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

< 공원·녹지 계획 >

류 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계	22,888	100.0	
완충녹지	① 지방도928호선변	3,250	14.2
	② 북동측 경계부	10,373	45.3
	③ 배수지변	4,420	19.3
	④ 북서측 경계부 법면	2,921	12.8
소공원	1,924	8.4	

라. 상수계획

1) 종사자 산정

- 상근인구는 「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 (한국토지주택공사, 2015)」 자료와 예천 제2농공단지 사례를 적용하여 산정
- 이용인구는 교통량 추정을 위한 시설별 활동인구 추정원단위 적용

< 상근 및 이용인구 산정 >

유치업종	면적(㎡)	원단위(인/천㎡)		이용인구(인)		
		상근	이용	상근	이용	합계
합 계	124,170			589	248	837
C10 식료품	33,715	3.9	1.13	131	38	169
C11 음료	23,180	2.8	1.13	65	27	92
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65,677	4.5	1.57	387	103	490
C25 금속가공제품		4.3				
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		9.5				
C28 전기장비제품		5.8				
C29 기타기계 및 장비		5.4				
지원시설용지	1,598	3.87	50.08	6	80	86

주1) 산업시설 상근인구 원단위 : 「기업체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입지공급방안 연구 자료집, 국토교통부, 2016」

주2) 지원시설 상근인구 원단위 : 예천2농공단지 사례 적용

주3)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의 이용인구는 교통성검토 산출결과 적용

주4) 2개 이상 업종의 원단위는 각 업종의 원단위 평균치 적용

2) 공업용수량 산정

- 「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(환경부,2018)」에서 제시한 업종별 용수원단위를 업종별 배분면적에 적용한 결과 필요한 공업용수량(일최대급수량)은 1,345㎡/일로 산정됨

< 공업용수량 산정 >

구 분	계획면적(㎡)	부지면적원단위 (㎡/천㎡·일)	일최대급수량 (㎡/일)	비고
계	122,572		1,345	
식료품제조업 (C10)	33,715	11.29	381	
음료제조업 (C11)	23,180	30.33	703	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(C22)	65,677	3.98	261	
금속가공제품 (C25)				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(C27)				
전기장비 (C28)				
기타기계 및 장비 (C29)				

3) 생활용수량 산정

- 산업시설용지의 생활용수는 「상수도시설기준(환경부,2010)」에 제시된 공장기준 (60~ 100 ℓ/인·일) 중 중간값인 80 ℓ/인·일을 적용
- 지원시설용지의 생활용수도 상기 기준상 관공서사무소기준(60~100 ℓ/인·일) 중 중간값인 80 ℓ/인·일을 적용
- 침투부하율은 「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(변경)(2015)」에서 제시한 1.36 적용

< 생활용수량 산정 >

유치업종	인구	급수원단위 (ℓ/인·일)	침투부하율	일최대급수량 (m³/일)
합 계	837			91
C10 식료품	169	80.0	1.36	18
C11 음료	92	80.0	1.36	10
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490	80.0	1.36	53
C25 금속 가공제품				
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				
C28 전기장비제품				
C29 기타기계 및 장비				
지원시설용지	86	80.0	1.36	10

4) 배수지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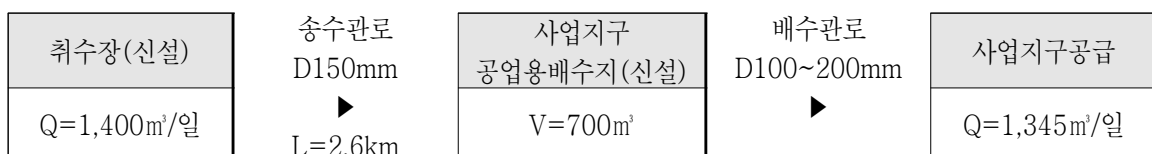
- 사업부지내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를 신설

<배수지계획>

구 분	시설의 세분	위 치	용 량 (m³)	비 고
신 설	배 수 지 (공업용수)	사업대상지 내부	V=700	

5) 용수공급계획

- 공업용수 공급은 내성천변 취수장(Q=1,400m³/일) 신설 및 사업지구내 공업용 배수지 (V=700m³) 신설을 계획하여 공급



마. 오·폐수계획

1) 공장폐수량 산정

- 공장폐수는 「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(환경부)」의 업종별 발생폐수량을 최근 3개년도의 평균값으로 하여 폐수화율 원단위를 적용

< 공업폐수량 산정 >

구 분	일최대급수량 (m³/일)	폐수화율 (%)	계획폐수량 (m³/일)	지하수량 (m³/일)	일최대폐수량 (m³/일)
계	1,345		596	30	626
식료품제조업 (C10)	381	72.88	278	14	292
음료제조업 (C11)	703	29.28	206	10	216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(C22)	261	43.04	112	6	118
금속가공제품 (C25)					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(C27)					
전기장비 (C28)					
기타기계 및 장비 (C29)					

주) 1.산업입지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(건교부 2006. 12)

2.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

3.지하수량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5%적용(환경부 2021. 6)

2) 생활오수량 산정

- 예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 적용

< 생활오수량 산정 >

유치업종	인구	일최대 급수량 (m³/일)	유효 수율 (%)	오수 화율 (%)	일최대 오수량 (m³/일)	지하 수량 (m³/일)	계획 일최대 오수량 (m³/일)
합 계	837	91			73	4	77
C10 식료품	169	18	90	90	14	1	15
C11 음료	92	10	90	90	8	0.5	8.5
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490	53	90	90	43	2	45
C25 금속가공제품							
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							
C28 전기장비제품							
C29 기타기계 및 장비							
지원시설용지	86	10	90	90	8	0.5	8.5

3) 총 오·폐수량 산정

- 오·폐수량은 공장폐수 626m³/일, 생활오수 77m³/일, 총 703m³/일로 산정

4) 하수처리계획

- 사업지구 내 발행하는 오·폐수는 지구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하여 방류
- 지구내 오수관로 L=1,445m(D200, D300mm) 계획

바. 통신공급계획

- 통신수요량 약 568회선으로 추정
- 통신공급은 KT예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할 계획임

< 통신수요량 >

구 분	계획면적(㎡)	연면적(㎡)	원단위	수요량(회선)	비고
합계	126,238	189,357		568	
산업시설용지	122,572	183,858	0.3회선/100㎡	552	용적률 150%
지원시설용지	1,598	2,397	0.3회선/100㎡	7	
주차장	2,068	3,102	0.3회선/100㎡	9	

사. 자원순환 집행계획

1) 폐기물발생량 추정

- 단지내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폐기물(일반, 지정폐기물)과 종업원에 의한 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량 산정

구분	면적(㎡)	종사자수(인)	생활폐기물 발생량(ton/일)	가연성 폐기물 발생량(ton/year)
산업시설용지	122,572	751	240.32	234.23
식료품	56,895	261	83.52	56.90
음료				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65,677	490	156.8	177.33
금속 가공제품				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				
전기장비제품				
기타기계 및 장비				
지원시설용지	1,598	86	12.04	—
합계	124,170	837	252.4	234.23

자료 : 1. 제6차(2021~2022년) 전국폐기물통계조사, 2022. 12, 환경부
2.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, 2015, 한국토지주택공사

2) 폐기물처리계획

-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각각 예천군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의해 소각 및 매립처리토록 함
-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이며,
- 사업대상지내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

8. 재원조달계획

가. 재원조달계획

- 총사업비 중 공사비 16,152백만원(64.3%), 보상비 4,833백만원(19.2%), 부대비 4,150백만원(16.5%)을 각각 차지

< 사업비 내역 >

구 분	총사업비(백만원)	비 고
합 계	25,135	
보상비	4,833	
토지보상비	4,037	■ 제2농공단지 실보상비 참조
지장물보상비	375	■ 분묘(173기) 등 보상비
간접보상비	420	■ 영농보상비 등
공사비	16,152	
토공	3,409	■ 절토 68만 ^m ³ , 성토 43만 ^m ³ , 사토 25만 ^m ³
우수공	2,022	■ 우수관로 설치
오수공	686	■ 오수관로 설치
상수공	549	■ 상수관로 설치
포장공	2,609	■ 차도 및 보도포장, 교통안전시설물 등
저류지공	405	■ 영구저류지(1개소)
조경공	1,527	■ 소공원 및 완충, 경관녹지
구조물공	956	■ 보강토옹벽, 역T형옹벽
배수지	838	■ 배수지(공업용수) 신설
부대공	2,295	■ 임시침사지, 가배수로, 세륜세차시설 등
전기공	856	■ 공원등, 가로등 및 신호등 1식
부대비	4,150	
설계감리비	1,691	■ 공사비의 10.47%
배전간선 지중화	1,517	■ 용역비, 공사비, 한전부담금 포함
농지전용부담금	161	■ 농지(전, 답) 개별공시지가의 30% 적용
생태계보전협력금	152	■ 대지, 도로외 지목, 지역계수적용
예비비	630	■ 보상비와 공사비 합계의 3~4%

나. 사업비 재원 및 연차별 투자계획

< 연차별 투자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21년	2022년	2023년 이후
합 계	25,135	1,255	1,024	6,000	16,856
보상비	4,833	—	630	4,000	203
공사비	16,152	—	—	1,606	14,546
부대비	4,150	1,255	394	394	2107

9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 (붙임참조)

※ 수용 사용할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일체와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함함

10. 에너지사용계획

가. 전력공급계획

1) 기본방향

- 전력 원단위는 『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(2023.02.28)』 및 한국전력공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
- 기타시설은 건축 연면적당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산출

2) 최대전력부하 예측

-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8,369kW로 예측됨

가) 산업시설

- 산업시설의 최대전력부하는 8,196kW로 예측됨

유치업종	부지면적 (㎡)	전력원단위 (kWh/㎡.년)	전력 사용량 (MWh/년)	가동시간 (hr)	평균부하 (kW)	부하율 (%)	개별 최대부하 (kW)
식료품	33,715	466.0	15,711	6,964	2,256	60.2	3,748
음료	23,180	466.0	10,802	6,964	1,551	60.2	2,576
고무,금속 등	65,677	273.0	17,930	7,358	2,437	51.4	4,741
합계	122,572	—	44,443	—	6,244	—	11,065
총최대부하(kW)	11,065kW ÷ 1.35(부등률) = 8,196kW						

나) 기타시설

- 기타시설의 최대전력부하는 173kW로 예측됨

구 분	규 모 (㎡)	단위부하 (VA/㎡)	전력부하 (kVA)	수용률 (%)	수요부하 (kVA)
지원시설	2,397㎡	140	336	50	168
폐수처리장	703톤/일	100VA/톤	70	70	49
도 로, 주 차 장	26,147㎡	1.25	33	100	33
합계	—	—	439	—	250
변압기용량	250kVA/1.3(부등률) = 192kVA				
최대부하(kW)	192kVA × 0.9(역률) = 173kW				

주) 도로, · 주차장은 부지면적임

3) 전력공급계획

-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

나. 열(연료)공급계획

1) 기본방향

- 열 원단위는 『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(2023.02.28)』을 참고하여 산출
- 용지별 열사용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시설 및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산출함

2) 열수요예측

가) 산업시설 열수요 예측

- 산업시설의 연간 열부하는 88,780Gcal/년, 최대열부하는 12.6Gcal/h로 예측됨

유치업종	부지면적 (㎡)	연료 원단위 (Gcal/㎡·년)		열 수 요 (Gcal/년)		
		직접열	간접열	직 접 열	간 접 열	계
식료품	33,715	0.165	1.011	5,563	34,086	39,649
음료	23,180	0.165	1.011	3,825	23,435	27,260
고무,금속 등	65,677	0.186	0.147	12,216	9,655	21,871
합계	122,572	—	—	21,604	67,176	88,780

유치업종	간접열수요 (Gcal/년)	가동률 (%)	가동시간 (hr)	평균부하 (Gcal/h)	부하율 (%)	개별최대 부하 (Gcal/h)
식료품	34,086	79.5	6,964	4.9	75.0	6.5
음료	23,435	79.5	6,964	3.4	75.0	4.5
고무,금속 등	9,655	84.0	7,358	1.3	43.9	3.0
합 계	67,176	—	—	9.6	—	14
사업지구 총 최대부하	$14.0\text{Gcal/h} \times 0.9(\text{동시부하율}) = 12.6\text{Gcal/h}$					

나) 기타시설 열수요 예측

- 기타시설의 난방(급탕)용 연간 열수요량은 176Gcal/년, 최대열부하는 0.1cal/hr로 예측됨

구 분	연간 열 수요량(Gcal/년)			최대열부하(Gcal/hr)		
	난 방	급 탕	계	난 방	급 탕	계
지원시설	143	33	176	0.1	0.0	0.1

다) 기타시설 취사용 연료 예측

- 기타시설의 취사용 연료사용량은 1천Nm³/년으로 예측됨

건 물 용 도	규 모 (㎡)	원단위 (Mcal/㎡·년)	가스수요량		
			Gcal/년	천Nm³/년	toe/년
지원시설	2,397	2.84	7	1	1

3) 연료 공급계획

- 사업지구 필요 도시가스는 (주)대성청정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

구 분	직접열 연료수요량			간접열 연료수요량		
	열수요량 (Gcal/년)	연료수요량(LNG)		열수요량 (Gcal/년)	연료수요량(LNG)	
		천Nm³/년	toe/년		천Nm³/년	toe/년
식료품	5,563	541	557	34,086	3,313	3,409
음료	3,825	375	382	23,435	2,300	2,344
고무,금속 등	12,216	1,199	1,222	9,655	947	965
지원시설	—	—	—	176	22	22
취사용	7	1	1	—	—	—
냉 방 용	21,611	2,116	2,162	67,352	6,582	6,740
합 계	43,222	4,232	4,324	134,704	13,164	13,480

4)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

- 본 사업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139호(2020.02.28.) 「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」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, 공급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항 목	요 건	사 업 지 구	결 과
연료 사용량 (간접열)	연간 5만toe이상	0.67 만toe/년	부적합
열 밀 도	60Gcal/㎥·h 이상	70.3 Gcal/㎥·h	적 합
에너지생산비율	열생산 용량이 전력생산 용량을 초과할 것	해당 없음	—
발전시설용량	2만 kW 이상	해당 없음	—

주) 연료사용량 및 최대부하를 감안한 열밀도는 집단에너지시설로부터 열공급이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산정

11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6조제4항)

가.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

- 유치업종별 특성을 감안하고 집적화하여 생산성 도모
- 주변 환경 및 농공단지 내 생산 환경 측면을 고려한 배치
- 업종별 특성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입지 유도

< 유치업종별 계획면적 >

표준산업코드(중분류)	유치업종	면적(㎡)	구성비(%)
합 계		122,572	100.0
C10	식 료 품	33,715	27.5
C11	음 료	23,180	18.9
C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 가공제품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	65,677	53.6
C25			
C27			
C28			
C29			

나.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

< 입주수요 현황 >

유치업종		계획면적(㎡)	수요면적(㎡)	수요/계획(%)
합 계		122,572	189,300	154.4
C10	식 료 품	33,715	40,000	118.6
C11	음 료	23,180	96,000	414.1
C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 가공제품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	65,677	53,300	81.1
C25				
C27				
C28				
C29				

다.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

- 공공폐수처리시설비는 「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, 환경부, 2020.1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예천군은 우선지원농어촌에 해당되어 100% 지원대상임

< 농공단지 지원비율(%) >

합 계	일반 농어촌		추가지원 농어촌		우선지원 농어촌
	국고	원인자 등	국고	원인자 등	국고
100	50	50	70	30	100

12. 군관리계획결정(지구단위계획 포함)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

가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·지구·구역)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합 계		180,699	—	180,699	
관 리 지 역	소 계	120,133	증) 60,566	180,699	
	보전관리지역	119,034	감) 119,034	—	
	생산관리지역	—	—	—	
	계획관리지역	1,099	증) 179,600	180,699	
농림지역		60,566	감) 60,566	—	

2)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 정	변 경			
가	예천군 보문면 산월리 일원	보전 관리지역	계획 관리지역	119,034	150% 이하	■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나	예천군 보문면 산월리 일원	농림지역	계획 관리지역	60,566	150% 이하	■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3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예2	예천 제3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보문면 산월리 일원	—	증) 180,699	180,699		

4)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예2	예천 제3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	■ 신설 - 위치 :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- 면적 : 180,699㎡	■ 제2농공단지와 더불어 신도청시대를 맞이하는 낙후지역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예천 제3농공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 총괄표

류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	비고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
합계	12	1,884	24,079	1	92	1,840	2	450	6,750	9	1,342	15,489	
중로	9	1,735	23,518	1	92	1,840	2	450	6,750	6	1,193	14,928	
소로	3	149	561	-	-	-	-	-	-	3	149	561	

(2) 도로 결정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1	농1	20	집산 도로	92	신월리 759-6	신월리 433-1	일반 도로	-		
기정	중로	2	928 나	15	간선 도로	13,414	동본리 576	독양리 37-7	일반 도로			-
변경	중로	2	928 나	15	간선 도로	13,414	동본리 576	독양리 37-7	일반 도로			선형 변경 (구역외도로)
신설	중로	2	농1	15	국지 도로	277	신월리 433-1	신월리 565-3	일반 도로	-		
신설	중로	2	농2	15	국지 도로	173	신월리 433	신월리 253-1	일반 도로	-		
신설	중로	3	농1	12	국지 도로	222	신월리 산68입	신월리 433-1	일반 도로	-		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3	농2	12	국지 도로	127	신월리 253-1	신월리 252-1	일반 도로	-		
신설	중로	3	농3	12	국지 도로	332	신월리 252-1	신월리 565-3	일반 도로	-		
신설	중로	3	농4	12	국지 도로	224	신월리 562	신월리 산65	일반 도로	-		
신설	중로	3	농5	12	국지 도로	183	신월리 산65	신월리 252-1	일반 도로	-		
신설	중로	3	농6	12	국지 도로	105	신월리 580-4	신월리 260	일반 도로	-		
신설	소로	3	농1	4	국지 도로	88	신월리 565-3	승본리 산146	일반 도로	-		
신설	소로	3	농2	4	국지 도로	26	신월리 562	신월리 563	일반 도로	-		
신설	소로	3	농3	3	국지 도로	35	신월리 253-1	신월리 772-4	일반 도로	-		

(3)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2-928나	중로2-928나	• 도로 선형 변경 - B = 15m, L = 13,414m	• 단지 내 일부 편입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
-	중로1-농1	• 노선신설 - B = 20m, L = 92m	• 단지내로의 진입도로 신설
-	중로2-농1	• 노선신설 - B = 15m, L = 277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중로2-농2	• 노선신설 - B = 15m, L = 173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중로3-농1	• 노선신설 - B = 12m, L = 222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중로3-농2	• 노선신설 - B = 12m, L = 127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중로3-농3	• 노선신설 - B = 12m, L = 332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중로3-농4	• 노선신설 - B = 12m, L = 224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중로3-농5	• 노선신설 - B = 12m, L = 183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중로3-농6	• 노선신설 - B = 12m, L = 105m	• 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
-	소로3-농1	• 노선신설 - B = 4m, L = 88m	• 배수지 이용차량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
-	소로3-농2	• 노선신설 - B = 3m, L = 27m	• 지구외 연결 현황도로 확보를 위해 신설
-	소로3-농3	• 노선신설 - B = 3m, L = 35m	• 지구외 연결 현황도로 확보를 위해 신설

(4) 주차장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—	주차장	2개소	—	증) 2,068	2,068		
신설	농-1	주차장	보문면 신월리 431번지 일원	—	증) 1,045	1,045	—	
신설	농-2	주차장	보문면 신월리 561번지 일원	—	증) 1,023	1,023	—	

(5) 주차장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농-1	주차장	■ 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431번지 일원 - 면적 : 1,045㎡	■ 공원과 지원시설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
농-2	주차장	■ 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561번지 일원 - 면적 : 1,023㎡	■ 농공단지 내 근로자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

나) 공간시설

(1) 녹지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－	녹지		4개소	－	증) 20,964	20,964		
신설	농-1	녹지	완충녹지	보문면 신월리 551-4번지 일원	－	증) 3,250	3,250		
	농-2	녹지	완충녹지	보문면 신월리 253-1번지 일원	－	증) 10,373	10,373		
	농-3	녹지	완충녹지	보문면 송본리 산146번지 일원	－	증) 4,420	4,420		
	농-4	녹지	완충녹지	보문면 신월리 565-1번지 일원	－	증) 2,921	2,921		

(2) 녹지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농-1	완충녹지	■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551-4번지 일원 - 면적 : 3,250㎡	■주변 농경지 및 산지와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
농-2	완충녹지	■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253-1번지 일원 - 면적 : 10,373㎡	■주변 농경지 및 산지와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
농-3	완충녹지	■신설 - 위치 : 보문면 승본리 산146번지 일원 - 면적 : 4,420㎡	■주변 농경지 및 산지와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
농-4	완충녹지	■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565-1번지 일원 - 면적 : 2,921㎡	■주변 농경지 및 산지와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

(3)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농1	공원	소공원	보문면 신월리 431 일원	-	증) 1,924	1,924	-	

(4) 공원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농1	소공원	■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431 일원 - 면적 : 1,924㎡	■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이용객의 휴식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한 소공원 신설

(5) 공원조성계획

■ 총괄표

구분		결정면적		비고
		면적(㎡)	구성비(%)	
총계		1,924	100.0	
세부 시설	소계	143	7.4	
	도로및광장	95	4.9	
	휴양시설	48	2.5	
녹지및기타		1,781	92.6	

■ 공원조성 세부시설 결정조서

구 분		기호		세부시설명	결정면적		공작물 (개소)	비고	
					면적(㎡)	비율(%)			
총 계					1,924	100.0			
시설소계					143	7.4			
	도로 및 광장	소 계			95	4.9			
			도로			95	4.9		
	휴양 시설	소 계			48	2.5			
		1	휴게쉼터			48	2.5		
		1-1	파고라					1	
		1-2	평의자					4	
		1-3	등의자					4	
		1-4	등의자						
	녹지 및 기타		소 계			1,781	92.6		
			녹 지			1,781	92.6		

■ 도로 결정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㎡)	거점	종점	비고
합계					63.3	94.8	-	-	
1	신설	소로	3	농4	1.5	16.7	25.0	주차장	소로 3-농5
2	신설		3	농5	1.5	46.6	69.8	공원 서측 경계	주차장

다) 유통 및 공급시설

(1)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농-1	수도공급설비	보문면 신월리 산146번지 일원	-	증) 487	487	-	

(2) 수도공급설비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농-1	수도공급설비	■ 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산146번지 일원 - 면적 : 487㎡	■ 신설된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

라) 방재시설

(1) 유수지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농-1	유수지	저류시설	보문면 신월리 504-1번지 일원	-	증) 3,874	3,874	-	

(2) 유수지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농-1	유수지	■ 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504-1번지 일원 - 면적 : 3,874㎡	■ 신설된 농공단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막기위해 저류시설 신설

마) 환경기초시설

(1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농-1	수질오염방지시설	폐수종말처리시설	보문면 신월리 504번지 일원	-	증) 3,133	3,133	-	

(2)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농-1	수질오염방지시설	■ 신설 - 위치 : 보문면 신월리 504번지 일원 - 면적 : 3,133㎡	■ 신설된 농공단지의 폐수처리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구번호	면적(㎡)	획 지			비고
		획지번호	위 치	면적(㎡)	
A1	1,598	A1-1	보문면 신월리 260	779	지원시설용지
		A1-2	보문면 신월리 431	819	지원시설용지
B1	9,091	B1-1	보문면 신월리 503-1	4,246	산업시설용지
		B1-2	보문면 신월리 502	4,845	산업시설용지
B2	24,624	B2-1	보문면 신월리 561	4,066	산업시설용지
		B2-2	보문면 신월리 567	4,386	산업시설용지
		B2-3	보문면 신월리 산69	4,040	산업시설용지
		B2-4	보문면 신월리 산68	3,706	산업시설용지
		B2-5	보문면 신월리 산68	4,386	산업시설용지
		B2-6	보문면 신월리 산68	4,040	산업시설용지
B3	14,636	B3-1	보문면 신월리 565-2	5,102	산업시설용지
		B3-2	보문면 신월리 564	4,896	산업시설용지
		B3-3	보문면 신월리 566	4,638	산업시설용지
B4	4,422	B4-1	보문면 신월리 433	4,422	산업시설용지
B5	18,757	B5-1	보문면 신월리 산66	3,192	산업시설용지
		B5-2	보문면 신월리 759-4	3,248	산업시설용지
		B5-3	보문면 신월리 253-1	5,056	산업시설용지
		B5-4	보문면 신월리 258-1	4,069	산업시설용지
		B5-5	보문면 신월리 569	3,192	산업시설용지
B6	23,013	B6-1	보문면 신월리 산72-1	3,780	산업시설용지
		B6-2	보문면 신월리 597-2	3,836	산업시설용지
		B6-3	보문면 신월리 367	3,891	산업시설용지
		B6-4	보문면 신월리 산64-2	3,891	산업시설용지
		B6-5	보문면 신월리 459-1	3,836	산업시설용지
		B6-6	보문면 신월리 산65	3,780	산업시설용지
B7	28,029	B7-1	보문면 승본리 366	3,991	산업시설용지
		B7-2	보문면 승본리 366	3,991	산업시설용지
		B7-3	보문면 승본리 365	7,054	산업시설용지
		B7-4	보문면 신월리 산63	5,463	산업시설용지
		B7-5	보문면 신월리 산63	3,953	산업시설용지
		B7-6	보문면 승본리 365	3,577	산업시설용지

※ 상기 면적(획지)은 도로에 의해 구획된 가구면적 범위에서 유치업종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대지분할가능선으로 구획된 면적으로서, 향후 산업시설용지 분양시 입주업체의 분양요구에 따라 공급면적을 대지분할가능선과 무관하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공급할 수 있음

3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비고
B1-1~2, B2-1~6, B3-1~3, B4-1, B5-1~5, B6-1~6, B7-1~6	-	용 도	허용 용도	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(부대시설 포함)	산업시설 용 지
			불허 용도	■ 허용용도 이외 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공장	
		건폐율	■ 70% 이하		
		용적률	■ 150% 이하		
		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-		
A1-1~2	-	용 도	허용 용도	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(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	지원시설 용 지
			권장 용도	■ 생산활동지원시설	
			불허 용도	■ 허용용도 이외	
		건폐율	■ 70% 이하		
		용적률	■ 150% 이하		
		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	■ 4층 이하		

4)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) 차량출입불허구간

구 분	적 용 기 준
차량출입 불허구간 	- 대상지내 주요 가각부 부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계획 ※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참조

13. 관련도면

- 관계도서는 예천군 지역경제과(☎054-650-623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-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.